

의안번호	제 564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광희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7년 2월 13일

#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광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6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2월 13일

발의자 : 이광희, 이양섭, 김영주,  
박우양, 박종규, 윤은희,  
장선배

## 1. 개정이유

- 지역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항을 개정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도의회 의결 사항을 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용도 확대 (안 제3조의2)

-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 대상을 자활근로사업단 까지 확대

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항 변경 (안 제5조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의2 → 제3조

다. 광역자활센터 전세금 대여 조항 신설 (안 제8조의2)

라. 도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(안 제9조)

- 용어 개정 : 이차보전(利差補填) →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

마.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도의회 의결 사항 규정 (안 제11조)

**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**

#### **4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
다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-7호

라. 협의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와 협의함.

마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설치하고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기금의 운용관리”를 “설치하고, 그 운용·관리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”으로, “제26조의 4”를 “제26조의4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도지사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의2 제목 “(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의 내용)”을 “(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)”으로 하고,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충청북도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자활기업의”를 “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영 제3조의2”를 “영 제3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”를 “(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대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자금은”을 “자활기업의 점포 전세금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

“지방재정법” 을 “「지방재정법」” 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 대여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을 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세금의 대여기간은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의 존속 기간으로 하고, 대여자금의 이자는 제8조제4항을 적용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이차보전(利差補填)” 을 “(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“이차보전” 을 “금리차액 보전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리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리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.

제11조의 제목 “(기금운용계획)” 을 “(기금운용계획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” 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자활기금을 <u>설치하고</u>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기금의 <u>운용관리</u>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설치하고, 그 운 용 · 관리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충청북도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<u>제26조의 4</u>에서 정한 사업</p> <p>2. (생   략)</p> <p>3. 그 밖에 <u>도지사</u>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4. · 5. (생   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----- <u>제26조의4</u>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 지사”라 한다)</u>----- -----</p> <p>4. · 5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의2(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의 내용) 제3조제2호에서 “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”이란 <u>충청북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</u>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5. (생략)</li> <li>6. <u>자활기업의</u>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</li> <li>7. ~ 9. (생략)</li> </ol>	<p>제3조의2(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) ----- -----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~ 5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6. <u>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</u> -----</li> <li>7. ~ 9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5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기관·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</li> <li>2.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</li> <li>3. 법 제18조 및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</u>」 제31조에 따른 <u>자활기업</u></li> <li>4. ~ 7. (생략)</li> </ol>	<p>제5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 ----- -----</li> <li>2. 영 제3조-----</li> <li>3. 법 제18조 및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</u>」 제31조에 따른 <u>자활기업</u></li> <li>4. ~ 7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 (생략)</p> <p>②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1억원 이내로 한다. 단,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금의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대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1억원 이내로 한다. 단, 자활기업의 점포 전세금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금의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8조의2(광역자활센터에 전세자금 대여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을 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전세금의 대여기간은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의 존속 기간으로 하고, 대여자금의 이자는 제8조제4항을 적용한다.</p>
<p>제9조 이차보전(利差補填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.</p>	<p>제9조 (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액보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액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.</p>



현행	개정안
<p>③ <u>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.</u></p>	<p>③ <u>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리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리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1조(기금운용계획) ① <u>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2. <u>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</li> </ol>	<p>제11조(기금운용계획 등) ① <u>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수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u></p>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5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  
<개정 2015.12.10>

1.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·관·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2.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·부문·정책사업·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5.12.10>

1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2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## 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## 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제3조(차상위계층) 법 제2조제10호에서 “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“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15.4.20.]

[제3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<2015.4.20.>]

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설치)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“라 한다) 또는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20.>

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<개정 2012.6.12., 2015.4.20.>

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(補填)
2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6.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
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
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10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